

예탁증권담보용자 설명서

(2021. 02. 01 개정)

BNK 투자증권

(주) BNK투자증권

1. 용자서비스 개요

고객의 위탁계좌에 예탁된 상장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을 담보로 용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
2. 용자약정

- 1) 당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국내 실명 개인 및 법인고객에 대해 약정 가능합니다.
- 2) 고객 본인의 계좌관리지점에 직접 내접하여 약정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.
※ 단, HTS 고객은 HTS 약정 신청도 가능합니다.
- 3) 1회 약정으로 지속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며, 고객 요구시에 약정만료일 지정이 가능합니다.
- 4) 내접 약정시 개인고객은 실명확인증표와 거래인감이 필요하며, 법인계좌는 위임장(법인인감도장 날인), 사업자등록증, 법인인감증명서, 거래인감, 대리인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.
- 5) 다음과 같은 고객은 용자약정이 불가합니다.
 - ① 담보부족계좌.
 - ② 위탁증거금 면제계좌.
 - ③ 미성년자 및 채무불이행자.
 - ④ 당사 특수관계인.
 - ⑤ 휴대폰번호 미등록자, 자택 및 직장 연락처 미등록자, 반송등록계좌
 - ⑥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해 별도로 지정한 자.
- 6) 용자약정시 본인의 용자한도를 정하며, 계좌별로 지정한 용자한도에 따라 수입인지 대금을 징수(HTS를 이용한 용자약정 시에도 동일)하며 용자한도는 계좌별 한도가 아니라 실명번호(개인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 및 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(등록)번호) 기준으로 총 한도입니다.
 - ① 용자한도 : 개인 및 법인 - 최대 20억원(담보종목 등급별 차등적용, 별표 1참고)
 - ② 한도증액 : 고객의 신청에 따라 당사의 기준에 의거, 심사 후 증액이 가능하며 증액금액은 신청 고객의 신용상태, 기여도, 용자대상 증권평가내역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.
 - ③ 고객부담 수입인지 대금 : 계좌별로 지정한 용자한도에 해당하는 인지대금의 1/2을 고객이 부담 (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)

3. 용자신청 및 용자

- 1) 용자신청
 - ① 용자신청은 용자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계좌관리지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 - ② 지점방문 신청외, 유선 및 HTS 신청도 가능합니다.
 - ③ 내접 용자신청시 개인은 신청서(거래인감 날인)를 징구하며, 법인은 위임장(거래인감날인), 사업자등록증, 대리인 실명확인증표, 신청서(거래인감 날인)를 징구합니다.
- 2) 용자대상 증권
 - ① 용자대상 증권은 고객 계좌내 보유한 상장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입니다.
 - ② 용자 최소단위는 1만원단위로 지정하며, 1회 최저 대출한도는 없습니다.
 - ③ 용자대상 증권은
 - 가) 증권시장 상장주권
 - 나) 채권
 - 상장채권
 - 국채, 지방채, 통화안정증권
 - 특수채, 은행채, 금융기관채 및 회사채 : 2개 신용평가사로부터 'AA' 등급 이상을 받은 채권 중 회사가 선정한 채권(ABS는 제외하며 전환사채(CB), 교환사채(EB)는 포함합니다)
 - 다) 집합투자증권: 채권형 집합투자증권, 주식형 집합투자증권, 혼합형 집합투자증권, MMF, 단, 신탁수익증권, 단위형 집합투자증권, 사모형 집합투자증권, 중도해지 또는 중도환매가 불가능(폐쇄형 집합투자증권)한 경우 제외

④ 용자대상 제외 증권 :

- 가)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,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
- 나)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
- 다)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했거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증권
- 라) 비상장채권
- 마)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채권
- 바) 단위형 집합투자증권, 사모형 집합투자증권,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집합투자증권 및 신탁수익증권
- 사)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것
- 아)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중인 증권
- 자) 비상장증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
 -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
 -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업자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국제신용평가기관(이하 신용평가업자 라 한다)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투자적격등급(Moody's는 Baa3 이상, S&P는 BBB- 이상, IBCA는 BBB 이상, 국내 신용평가기관은 회사채 BBB 이상, 기업어음증권 A3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) 미만의 판정을 받은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증권 발행법인이 발행한 주권
- 차)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
- 카) 주식워런트증권
- 타) 증권시장상장주권 중 위탁증거금 100%징수종목

⑤ 회사는 용자대상 제외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신설 2016.8.1)

- 가)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 증권
- 나) 한국거래소가 주식의 병합, 분할, 주식교환, 주식이전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 주식의 상호전환 등을 위하여 주권 등의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증권

3) 용자한도

① 용자한도는 고객이 약정시 정한 최고용자한도금액 내에서

- 가) 상장주식의 경우 : 용자대상종목 전일종가에 따른 평가금액의 종목등급별 대출가능비율만큼 용자 가능
- 나) 상장채권의 경우 : 용자대상종목 민간시가평가금액의 50%까지 용자 가능
- 다)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: 채권형/ MMF의 경우 평가금액의 70%, 주식형(혼합형포함)의 경우 평가금액의 50%까지 용자 가능

② 신용등급변경에 따른 용자한도 변경은 한국신용평가정보(주)에서 제공하는 고객의 신용등급 변경에 따라 용자한도가 증액 또는 축소 될 수 있습니다.

4) 용자기간

- ① 용자기간은 90일입니다.
- ② 단, 용자만기일이 비영업일인 경우는 익영업일을 용자만기일로 하며, 이 경우 이자징수는 익영업일 까지의 이자를 징수합니다.
- ③ 용자만기일 연장은 고객 요청시, 당사 기준에 의거하여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.

5) 용자금리[윤년(366일)의 경우 해당일수 반영]

- ① 용자금리는 종목등급별 차등적용되며(별표1 참고), 연장 시 연 6.9%, 연체 시에는 미납금에 대해 '약정이자율+3%(최대 연 7.5%)'를 적용하며, 당사와의 협의를 통해 계좌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용자건 별로 징수합니다.
 - 매도담보용자 기준이자율은 연 5.5%로 하향 조정(2020.08.03)
- ② 회사가 정한 용자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일 당일 용자분부터 적용됩니다.
- ③ 용자이자는 정기이자의 경우 매월 첫 영업일에 징수하며, 중도상환의 경우는 상환일에 이자를 징수합니다.

- ④ 연체이자율은 '약정이자율+3%(최대 연 7.5%)'으로 해당 연체이자율은 만기 이내 종목등급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.
- ⑤ 연체이자 산정 시 약정이자율에는 신용공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.

4. 담보관리 및 담보교체

1) 담보관리

- ① 최소담보유지비율은 신용공여용자액(2개이상의 신용공여가 있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함) 또는 신용거래대주시가상당액의 140%(임의상환비율130%도 적용)이며, 미달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.
 - 최소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추가담보납부기간은 추가담보제공요구일(담보부족발생일)포함 2영업일 단, 임의상환비율 미달 시에는 추가담보제공요구일 당일입니다.
- ② 추가담보 납부요구는 통화내용 녹취, 전자메일, SMS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등 요구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.
- ③ 용자대상 증권의 평가는
 - 가) 상장주식의 경우 : 담보주식(원담보주식 및 부담보주식)평가는 당일종가(당일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)로 계산합니다.
 - 나) 상장채권의 경우 : 담보채권(원담보채권 및 부담보채권)평가는 2개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(기준가격:시가평가)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.
 - 다)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: 담보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일 기준가(전일종가)로 계산합니다.
- ④ 추가담보납부기간(최소담보유지비율 140% 미만 시에는 추가담보제공요구일(담보부족발생일)포함 2영업일, 임의상환비율 130% 미달 시에는 추가담보제공요구일 당일)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을때에는
 - 가) 상장주식의 경우 : 익영업일 아침 동시호가 시간대에 별표2에 따라 반대매매 처리
 - 나) 상장채권의 경우 : 익영업일 증권시장 또는 장외시장을 통해 처분하여 담보유지비율을 충족시킵니다.
 - 다)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: 익영업일 매매시간내 반대매매를 통해 임의상환 정리됩니다.
- ⑤ 담보로 지정된 증권에 대해서는 출고가 불가능 합니다.

2) 담보교체

담보교체는 고객 요구시 교체가 가능하며, 교체 증권의 용자가능금액이 용자잔고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가능 합니다.

5. 질권의 설정 및 해지

- 1) 질권설정에 대한 약정은 별도의 약정없이 예탁증권 담보용자 약정 체결과 함께 체결됩니다.
- 2) 질권설정은 용자신청에 따라 담보로 징구되는 증권에 대해 용자금 지급시 이루어 집니다.
- 3)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질권설정되며 이에 따라 잔고내역 및 거래내역, 제증명서 등에 질권설정 내역을 표기합니다.
- 4) 추가담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질권이 설정됩니다.
- 5) 질권설정 해지는 용자금 전액 상환시 자동해지되며 질권설정 약정은 용자약정 해지시 자동해지 됩니다.

6. 중도상환 및 만기상환

- 1) 상환방법에는 현금상환과 매도상환이 있습니다.
 - ① 현금상환 : 현금으로 용자금 상환하는 것이며,
 - ② 매도상환 : 용자 담보주식의 일부(또는 전부)를 매도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매도상환일은 매도주식의 결제일입니다.
- 2) 중도상환은 용자 지점에서 중도상환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상환하시거나, 유선 및 HTS 상으로도 상환이 가능합니다.
- 3) 만기일에 용자금을 미상환할 경우,
 - ① 상장주식의 경우 : 만기일 익영업일 아침 동시호가 시간대에 별표2에 따라 반대매매 처리

- ② 상장채권의 경우 : 증권시장 또는 장외시장을 통하여 처분하며, 이 경우 담보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, 연체이자, 이자, 용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합니다.
- ③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: 만기일 익영업일 매매시간내 반대매매 처리
- 4) 채권담보용자의 경우 채권만기일에 자동상환 처리됩니다.

7. 반대매매순서

당사는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고객계좌에 두 가지 이상의 용자(예탁증권담보용자, 신용거래용자등)가 있을 경우,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며, 해당계좌에서 담보부족발생시 반대매매 처리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. 단, 고객이 8시40분까지 요청하는 경우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.

- 1) 신용용자종목
 - ① 용자일 빠른 순서 ② (용자일이 동일할 때) 유통용자, 자기용자 순서 ③ 종목번호 빠른 순서
- 2) 예탁증권 담보용자 증권
 - ① 용자일 빠른 순서 ② (용자일이 동일할 때) 종목번호 빠른 순서

8.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되어 있는 예탁증권담보용자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[별표 1] 종목별 담보용자 한도 및 대출가능비율

주식

구분등급	위탁증거금율	대출가능비율	대출한도		연 이자율
			개인	법인	
S	20 %	65 %	25 억원	25 억원	5.5 %
A	30 %		20 억원	20 억원	
B	40 %	55 %	15 억원	15 억원	6.0 %
C			5 억원	5 억원	6.5 %
개별심사등급	100 %	신용불가	신용불가	신용불가	-

채권 및 집합투자증권

구분		대출가능비율	대출한도		연 이자율
채권	상장채권		개인	법인	
집합투자증권	채권형,MMF	70 %	20억원	20억원	5.5 %
	주식형,혼합형	50 %			

※ 대출한도는 고객별 주식,채권,집합투자증권을 합산하여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[별표 2] 반대매매 수량산출 및 주문 기준가격

구분	기준가격
S, A, B	전일종가 -15 %
C, 개별심사등급	전일종가 -30 %

▶ 본인은 상기 설명서의 내용을 **충분히 이해**하였으며 설명서 및 대출약관을 **교부받았음을 확인**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

(인/서명)